



# 수입 농수산물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변경안내



# I. 개정 배경

## ◆ 배경

- 국회와 언론에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국산 농수산물에 적용하는 「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」(이하 원산지표시법)과 수입 농수산물에 적용하는 「대외무역법」간의 적용 혼선, 제재수준 차이 등에 대한 문제점 지속 제기
- 종전 「원산지 표시법」 제3조 단서 조항 삭제로 국산 및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 「원산지 표시법」 적용 일원화('17.6.3. 시행)

★ 수입 농수산물 (농수산물 가공품 포함)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방법, 위반시 처벌 등은 원산지표시법을 우선 적용

「원산지표시법」 §3 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 ~~다만,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은 「대외무역법」 제 33조 및 제 33조의 2를 따른다.~~ (단서 조항 삭제)

# II. 원산지 표시법 개요

## ◆ 개요

1. 수입 농수산물(가공품 포함)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**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**
2. 세관장은 수입 농수산물(가공품 포함) 통관시 표시여부 조사,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, 위반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을 할 수 있음

구분	근거	주요내용	비고
표시 의무자	법 제5조	▶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 함	대외무역법과 동일
표시 대상	시행령 제3조 제1항 2호,	▶ 「대외무역법」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★ 14류를 제외한 1류~24류 및 식용소금(HS 2501호) 상세내역: 「농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」 [별표 1],[ 별표 2] 참조	
표시 방법	법제5조 제2항 제5의3호 및 제4항	▶ 원산지표시법에 따른 방법 또는 「대외무역법」 제33조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이나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도 인정	
위반 유형	법 제5~6조	▶ 위반유형을 <b>미표시와 거짓표시로 구분</b> (2가지 유형) - 법 제5조 제1항 미표시(표시방법 위반 포함) - 법 제6조 제1항 거짓표시(손상, 오인표시 포함) ★ 2가지 위반 유형에 따라 과징금, 과태료 처분	대외무역법 5가지 유형
행정 제재	법 제6조의 2, 제9조, 제18조	▶ <b>미표시</b> 행위 → 과태료, 시정명령, 거래중지 등 ▶ <b>거짓표시</b> 행위 → 과징금, 시정명령, 거래중지 등	공표, 교육 추가





## Ⅲ. 원산지 표시 방법

### ◆ 표시 방법의 일반 원칙 (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)

1.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, 한자, 영문으로 표기

- ① “원산지 : 00” 또는 “00산”, “中國産” (예시- 원산지: 중국, 일본산)
- ② “made in 00” 또는 “product of 00” (예시- made in china, product of Japan)
- ③ “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, 주소, 국명”
- ④ “country of origin 국명” (예시- country of origin china)

2. 최종 구매자가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.

3. 최종 구매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 할 것.

4.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견고하게 할 것.

5. 제조 단계에서 인쇄, 등사, 낙인, 주조, 식각,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이 원칙  
(단, 물품 특성상 위 방식이 부적합할 경우 날인, 라벨, 스티커, 꼬리표 사용 가능)

6.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, 식품위생법 등 타 법령의 표시사항이 라벨, 스티커,  
꼬리표 등의 방법으로 부착되는 경우, 그 표시 사항에 원산지 항목을 추가하여 표시  
하여도 인정 가능

# IV.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내용

## 1. 표시 위반자 **공표**(원산지표시법 제9조 제2~5항)

- ① 공표 대상: 원산지 미표시 2회 이상 위반자 또는 거짓 표시자로 행정 처분이 확정된 경우,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함.(제9조 제2항)
- ② 공표 정보: 표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, 해당 영업소의 명칭. 농수산물의 명칭 그 밖에 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**홍 페이지**: 농림부, 해수부, 농관원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·검사기관, 시·군·구, 한국소비자원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
- ④ **기준/방법**: 대통령령으로 정함

## 2. 표시위반자 **교육**

- ① **교육 대상**: 원산지 표시를 위반(거짓, 손상, 혼동, 미표시, 부적정)하여 처분이 확정된 자
- ② **이수 기한**: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
- ③ **교육 기관**: “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”-교육비 무료
- ④ **교육 방법**: 교육기관에 입소 후 2시간 집합교육, 또는 온-라인을 통한 사이버 3시간 교육 중 선택
- ⑤ **교육내용, 교육대상, 교육기관, 교육기간 및 교육시행지침**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
- ⑥ 농림부 장관 등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위하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

# IV.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내용

## 3. 과징금 부과(원산지표시법 제6조의2)

### ① 과징금 부과 대상 (원산지표시법 시행령 [별표 1의2])

- 원산지 거짓 표시 등 (법 제6조의2제1항)으로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적용
- 1회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부터 **2년간 위반횟수를 합산하여** 과징금 부과

### ② 위반횟수 산정 방식(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)

- 최근 2년간 적발된 날부터 2차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위반 횟수 계산
- 원산지표시법시행령 시행일('17.6.3.) 이후 부터 횟수를 산정
- 위반횟수 계산은 **통관단계 뿐만 아니라 시중유통중 타기관의 적발 횟수까지 산입**

### ③ 위반금액 산정(원산지표시법 시행령 [별표 1의2])

- 위반 수입 농산물의 세관 수입신고금액(CIF) X 10%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
- 세관 수입신고금액 산정시 2년간 위반된 수입신고금액 모두 합산

# IV.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내용

## 4. 과태료 부과(원산지표시법 제18조)

### ① 과태료 부과 기준 (원산지표시법 제18조, 시행령 [별표 2])

- 원산지를 **표시하지 아니하거나, 표시방법**을 위반한 자
- **원산지조사**, 물품수거, 장부열람을 거부 \* **방해** \* **기피하는 자**
- **장부 미 보관자**, 위반자에 대한 교육 명령을 받고도 **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자**

### ② 과태료 부과 금액 (원산지표시법 시행령 [별표 2])

- **미표시**: 위반 수입 농수산물의 세관 수입신고금액(CIF) X 10%(5만원~1천만원)
- **표시방법 위반**: 미표시 과태료 부과 산식의 50% 에 해당하는 금액
- **조사거부 등, 교육 미 이수자**: 위반 차수에 따라 **20만원 ~ 500만원**

# 의견제출기한 20일 이내에 자진 납부 시 20% 감경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(3급이상) 등은 과태료 **50% 감경가능**





끝